다 모 컴 렌 탈 계 약 서

고객정보	고객명/상호명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휴 대 전 화	
	대표자 성명	(인)	담 당 자	(인)
	사업장 주소		E-mail	
	설치 장소			

렌탈상품정보	설치모델	기번	렌탈료 (단위:원/VAT별도)	기본제공매수(단위:매)		장당추가요금 (단위:원/VAT별도)
				흑백	컬러	
						장당칼라 원 장당흑백 원
						장당칼라 원 장당흑백 원
	보증금	1년이내 해지시 6개월분 청구, 1년이후 해지시 4개월분 청구				
	계약기간	202 년 월 일부터 202 년 월 일까지				
	※ 상품 설치 후 고객 단순변심에 의한 모델변경은 불가합니다.					

상 호 명 : 다 모 컴
사업자번호 : 131-26-57656
대 표 : 김 미 숙
본 사 주 소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303-20
연 락 처 : 032-466-1008 / 010-5582-3302 E-mail : damocom@naver.com

렌탈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은 렌탈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_____, 다모컴 양자간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2 년 월 일

다모컴 복합기 렌탈 이용약관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서는 "공급자" 소유의 렌탈 서비스용 기계를 "사용자"가 이용하도록 제공함과 동시에 제2 조에 규정한 렌탈 서비스를 실시하고 "사용자"는 본 계약서의 정한 바에 따라 렌탈 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조 (렌탈 서비스)

1. 렌탈 서비스란 "공급자" 소유의 기계를 "사용자"에게 임대함에 있어서 계약기간 중 대상기계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공급자"의 책임하에 유지보수 서비스와 소모성 부품을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지보수 서비스 : "공급자"는 공급자의 자주적인 계획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자를 파견하고 기계에 대한 정기점검 및 TEST를 실시하며 "공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모성 부품과 부품의 교환 및 수리를 실시하여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

나) 부품 : 토너, 현상제, 드럼, 각종 소모성 부품으로 한다. (용지제외)

제 3 조 (렌탈 서비스 대상기종 및 요금)

1. 렌탈 요금은 렌탈서비스 계약내용과 같다.
2. 렌탈 요금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함으로 렌탈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3. 렌탈 서비스를 위한 일체의 작업 실시는 "공급자"의 소정의 영업시간 내에 한하기로 한다.

제 4 조 (설치장소)

1. 기계의 설치장소는 렌탈서비스 계약서의 기재된 곳에 한정한다.
2. "사용자"는 기계의 기계설치 장소 변경을 할 때는 사전에 "공급자"에게 통보한다.
3. "공급자"는 기계의 이동설치에 따른 소요경비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공급자"의 청구액을 지급키로 한다.

제 5 조 (계약기간)

1. 렌탈계약서의 약정기간은 렌탈서비스 계약서 상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2. "사용자"와 "공급자" 어느 쪽에서도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해약통보가 없을시 본 계약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6 조 (렌탈 서비스 요금계산)

1. 렌탈 서비스 요금의 계산은 작성 COPY 매수로 하고 그 기초는 기계 개시 COUNTER의 수치로 가산한다.
2. "공급자"는 매월 요금계산의 마감일 기준으로 확인표에 카운터 수치를 기록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렌탈 서비스 요금을 계산한다.
3. 계약 개시의 월 또는 해약의 월에 있어서 기계의 사용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렌탈 서비스요금은 제3조의 월기본료 규정에 구애 없이 사용 COPY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렌탈 서비스 요금 계산시 감액하고자 한다.
   가) "공급자"의 기술자가 기계의 점검 등으로 인하여 카운터가 가산된 경우
   나) "공급자"의 구책됨을 인정한 불량 COPY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는 불량 카피본을 보관)

제 7 조 (렌탈 서비스 요금의 지불)

"사용자"는 렌탈 서비스 요금을 매월 "공급자"의 청구일에 해당 청구금액을 "공급자에게 현금 또는 카드결제로(온라인 입금/자동이체)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조 (보 증 금)

1. 보증금은 제3조의 렌탈 서비스 요금표에 의거 기계 납품과 동시에 "사용자"는 "공급자"에게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2. 보증금은 무이자로 하며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보증금 보관증을 발행한다.
3. 본 계약이 만료된 경우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보관증과 상환으로 보증금전액을 반환한다. (단,계약기간이 만료시 "사용자"의 채무액 상당액은 보증금에서 우선 상계한다.)

제 9 조 (소유권 및 선관의무)

1. "공급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한 제3조의 렌탈 서비스 대상기계와 소모성 부품은 "공급자"의 소유로 한다.
2. "사용자"는 "공급자"이 규정하는 기계 및 소모성부품을 관리 보존하여야 하며 화재 및 도난 등의 어떠한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기계 및 소모성부품이 "공급자"의 소유권임을 표시한 표식 등을 훼손함은 물론 기계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와 기계 및 소모성 부품을 타에 매각, 양도, 대여, 유용, 질권의 설정 또는 공장 저당권법에 의한 저당 목적물로 제공하는 행위 등 기타 "공급자"에게 손해의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사용자"는 "공급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제3자의 행위 (압류, 가압류, 가처분, 공조, 공과의 체납 등에 의한 행위)에 대해 "공급자"의 소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함
   물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공급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5. "사용자"는 2,3,4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계 및 소모성 부품이 손상되었을 경우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자"는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지정사용)

"사용자"는 "공급자"가 지정한 용지 및 "공급자"가 공급한 소모성 부품을 렌탈 서비스 대상기계에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공급자"가 지정한 용지 및 소모성부품 이외의 것을 사용함으로써 기계 및 소모성 부품이 손상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의 청구가 있을시 "사용자"는 즉시 배상한다.

제 11 조 (전환사용)

"사용자"가 당초의 목적 이외의 목적 (복사업 등)으로 렌탈 서비스 대상 기계를 전환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공급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는 본 계약서에 규정외의 특수조건에 합의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계약 해지 및 위약금)

1. "사용자" 또는 "공급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기간 1개월 이전에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전에 해약되는 경우 "사용자"는 "공급자"에게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3. 아래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이 해지되며 "사용자"는 "공급자"에 대해 그 때 현재의 채무전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가) "사용자"는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렌탈 서비스요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나) 본 계약 조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는 사유 발생시
   다) "사용자"에게 제9조 (소유권 및 선관의무)에 사유가 발생될 것을 "공급자"가 인지하였을 때
   라) "공급자" 당좌거래의 정지 등 공신력을 현저하게 상실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임차인은 렌탈계약 기간 중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잔여 렌탈료의 50%를 곱한 금액(잔여 렌탈료*50%)의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계약의 해약, 해지 효력)

1. 본 계약이 해약 및 해지된 경우 기계에 대한 계약 및 그에 관계된 각서, 추가계약서등 일체의 약정은 동시에 실효된다.
2. 본 계약이 해약 및 해지된 경우 "사용자"는 "공급자"에 대해 기계 및 소모성 부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소송 관할 법원)

1.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소송은 "공급자"의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법원으로 한다.
2.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